

제 495 호

1975. 4. 10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슌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941 호 :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원보수조례개정조례..... 3

◎ 훈 령

제 404 호 :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..... 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의용소방대원보수조례 개정조례들 이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1975년 4월 10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941 호

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원
보수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원보수조례들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소방법제
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
원의 출근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
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 당) ①의용소방대원이 소
방업무로 출근할 때에는 다음 각
호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
한다.

- 1. 서울특별시근대 1회 500 원
- 2. 분대 (타도) 1회 800 원
- 3. 교양훈련 1회 300 원

②전항의 출근수당은 소방서장이

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.

제 3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위임직자 규정을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1975년 4월 11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404 호

서울특별시위임직결
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위임직결규정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별표 위임직결구분중 1. 자실과 공통
사항란에 1의 2를, 동란중 3. 예산외계
5. 물건구매, 노력의 공급및 운반란에
④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.

- 6. 내무국 나. 인사과 보임 1. 2계
 - 1. 공무원의 임면란중 "해면"을 각
자 "해임"으로 하며 "직위해제"
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2의 2를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계 별	단위사업	세 부 사 업 명	결 계 권 자					원조처
			담당자	계장	과장	국장	부서장	
각종회 공 통	1.의 2. 직권 면직 및 직 위 배치	1. 소속직원의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(1) 3급감류 공무원 (2) 3급술류 공무원 (3) 4급이하 3. 예산회계 5. 출진대백, 노령의 공급 및 운반 (4) 1건당 30만원이하						내무국장
보임 1. 2 직	1. 공무원의 입면	2.의 2 공무원의 직권면직 및 직위배제 (1) 2급 공무원 (2) 3급 감류 공무원 (3) 3급 술류 공무원 (4) 4급 이하						
부 칙								
이 규정은 1975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								